

제 21 장 투 명 성

제 21.1 조 공 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관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제2항 가호에 따라 공표되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¹⁾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배포를 장려한다.

나. 대부분의 경우, 제안된 규정을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이전에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 그 공표에 제안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4.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채택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그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배포를 장려한다.

나. 그 공표에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 관보 또는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사이트의 뚜렷한 위치에 의견제시 기간 동안 접수된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처리하고, 제안된 규정

1)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규정**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수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21.2 조 정보의 제공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제 21.3 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21.1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다.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

제 21.4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

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 21.5 조 민간 구매에 관한 정책

자유화되고 확대된 양자간 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민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영향력이나 설득 수단을 통하여 억제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 21.6 조 부패방지

1.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재확인한다.

2.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 다음을 자국법상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이 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나 호의·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 나.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에게 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나 호의·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 다.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국제상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업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이 공적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 외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의·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 라.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가호 내지 다호에 기술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교사·방조 또는 공모하는 행위

3. 각 당사국은 제2항과 합치되게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형사조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과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각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뇌물수수행위를 선의로 신고하는 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5.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의 뇌물수수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및 다자적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 포럼에서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21.7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공적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다라 함은 공무원의 승인된 직무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라 함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외국 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직 또는 선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의 정부에서 외국의 입법·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외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공적 국제기구의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공적 기능이라 함은 조달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당사국의 이름으로 또는 당사국을 위하여 자연인이 수행하는 임시적이거나 상시적인, 유급 또는 명예직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직 또는 선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중앙정부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을 말한다.